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7. 4. .

발 의 자 : 김정일 위원 외 1

1.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인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지급 기준과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7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여비)
- 지방의회의원 위원회참석수당 관련 질의회신 통보 - 서울특별시행정과-4338(2006.4.10)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의2”로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며,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 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 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 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 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 ----- ----- -----실비보상----- -----.			
제7조(실비변상)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 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 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마포 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 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1991.04.20 조례제0156호]

개정 1994.01.08 조례제0237호

1994.11.28 조례제0274호

2000.02.17 조례제045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개정 '00.2.17)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개정 '94.11.28)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신설 '94.11.28)

제3조 (선임방법) ①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마포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 선임하며 그 책임자가 된다.(개정 '94.11.28)

③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신설 '94.11.28)

제4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감사위원회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변상) ①구청장은 감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4.01.08)

②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01.08)

제8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위원의 해촉) ①의장은 감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마포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할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감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감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위원의 제재) ①감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의장은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제46조의2 (검사위원의 선임)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하되, 그 정수·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1994.7.6>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2005.8.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

〈지방의회의원 위원회참석수당 관련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행정과-4338호 (2006.4.10),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3341(2006.5.26)〉

□ 질의내용 : 지방의원 보수체계 개편이후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시내용

○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 직무활동과 관련 없이 활동하는 것이므로 참석수당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8호)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별표 1] (개정 '96.3.2, '97.12.4, '98.11.27, '04.2.20, '06.5.18), 06.11.30)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6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